

<p>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.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.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. 기타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<p>⑤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인 경우"로 하고, 동조 제4항중 "학부모 및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"를 "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"로 한다.</p> <p>다만,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.)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 제3항 "연10회"를 "연8회"로 하고, "연30일"을 "연20일"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1조 중 "지방자치법 제130조의"를 "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"로 한다.</p> <p>안 제2조의 제목 "(용어의 정의)"를 "(정의)"로 한다.</p> <p>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조(사용료의 징수) ①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또는 분원별로 따로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6조 및 제8조로 하고, 제6조(종전의 제4조)의 제목 "(사용허가의 제한 등)"을 "(사용제한)"으로 하며, 제6조 본문 중 "원장은 다음 각호의"를 "다음 각호의"로 하고, 제4조 및 제5조,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4조(사용료의 감면)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사용료의 반환)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에 퇴소한 경우 또는 과오납한 경우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</p>
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3조제3항 단서 중 "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"를 "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"로 한다.</p>	<p>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1조 중 "지방자치법 제130조의"를 "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"로 한다.</p> <p>안 제2조의 제목 "(용어의 정의)"를 "(정의)"로 한다.</p> <p>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조(사용료의 징수) ①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또는 분원별로 따로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6조 및 제8조로 하고, 제6조(종전의 제4조)의 제목 "(사용허가의 제한 등)"을 "(사용제한)"으로 하며, 제6조 본문 중 "원장은 다음 각호의"를 "다음 각호의"로 하고, 제4조 및 제5조,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4조(사용료의 감면)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사용료의 반환)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에 퇴소한 경우 또는 과오납한 경우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</p>
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증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.</p> <p>제3조제1항 본문 중 "교원전체회의"를 "교직원 전체회의"로 하고,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 제3항 단서 중 "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"을 "잔여 임기가 3월 미만</p>	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증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.</p> <p>제3조제1항 본문 중 "교원전체회의"를 "교직원 전체회의"로 하고,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 제3항 단서 중 "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"을 "잔여 임기가 3월 미만</p>